

궁금합니다



Question | 화재안전기준(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10조 5항 4호를 보면, 분사헤드오리피스면적을 배관구경면적의 7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제한의 기준을 80%로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방출시간과 방사압을 맞추기 위해 오리피스 구경을 제한합니다. 표면화재 전역방출방식의 설계 시 이산화탄소 방출시간은 1분 이내, 방사압은 2.1MPa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사헤드 말단에서의 방사압이 위의 조건을 만족해

야 하므로, 배관에서의 각 헤드는 오리피스의 구경이 상이하며 당연히 최말단에서의 헤드오리피스의 구경이 제일 크고 용기에 가장 가까운 헤드는 구경이 작습니다. 1분 이내 방출하기 위해서는 헤드의 개수가 많아야 하고 방호구역 전 지역 내에 방사압, 방출시간을 일정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제한의 기준을 80%로 한다면 분사헤드 개수를 적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약제가 골고루 방출되도록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Question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482호)의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특수건물 소유자는 '중간생략'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옆 건물로 연소가 확대하여 옆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최초발화건물인 특수건물 소유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옆 건물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지요? 또한 만약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연소 확대된 옆 건물이 두 개의 건물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타인

이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소유주는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8월 30일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위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주관으로 경과실로 인한 실화 등에 대한 가혹한 배상책임과 피해자의 구제 등을 고려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 화재보험 가입 시 화재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면적이나 가입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나요? 도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화재 사고 시 100% 보상받기 위한 보험가입금액 산정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보험가입면적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건물 연면적으로, 도로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 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건물신축 단가표’에 의거하여 산정하시고, 건물의 보험가입금액 산정 시 건물 부속설비에 대하여도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가입하셔야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 지하 3층, 지상 4층의 1급 방화관리대상 건물입니다. 특별비상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문 외부에 대형간판을 설치하여 지상층 유리창문이 막힐 경우, 소방법과 건축법의 저촉유무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 현행 법규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이나 피난계단에 관련된 법규에는 창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2003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승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의 창문은 채광을 위하여 다른 구조 등으로 창문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의 경우 지상층이 4층이므로 위 건물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에 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이 소방이나 피난이 아닌 다른 취지로 간판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축법 제41조에 의거 방화지구 안의 간판은 주요부가 불연재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